

●환경부령 제1125호

●해양수산부령 제698호

기후 ·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0월 25일

환경부장관 인

해양수산부장관 인

기후 ·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후 ·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구대기감시망의 구축 · 운영 등) ① 「기후 ·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측장비 · 관측환경 · 관측방법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관측장비: 별표 1에 따른 기준
2. 관측환경: 별표 2에 따른 기준
3. 관측방법: 별표 3에 따른 기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구대기감시망(이하 “지구대기감시망”이라 한다)의 관측장비 · 관측환경 · 관측방법 등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3조(해양 · 극지방의 관측망) 「기후 ·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역을 말한다.

1. 영 제4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관측: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해구역 또는 근해구역
2. 영 제4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조사: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안해역,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해구역 또는 근해구역, 기수(바닷물과 민물이 섞여 염분이 적은 물)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

제4조(지구대기감시 품질관리 업무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구대기감시 품질관리 업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구대기감시망의 관측장비 및 관측 자료에 관한 품질기준 및 품질관리 항목을 국제기구 기준을 바탕으로 정하는 업무
 2. 제1호에 따른 품질기준에 따라 관측장비 및 관측 자료의 품질을 평가하는 업무
-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는 지구대기감시 요소별 관측 자료의 이상 유무에 대한 자동적 · 수동적 검토를 거쳐 산출된 통계를 기반으로 수행한다.
- ③ 국립기상과학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기상과학원장이 정한다.

제5조(기후예측 정보 및 이상기후 전망 정보의 주기 등) ① 기상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후예측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기로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 1. 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1개월전망: 주 1회
- 2.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3개월전망: 월 1회
- 3. 법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후전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기
 - 가. 계절 단위: 계절별 1회
 - 나. 연 단위(1년 단위 및 1년 초과 10년 이하의 연 단위): 연 1회

- ② 기상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이상기후 전망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기로 생산할 수 있고, 생산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릴 수 있다.

- 1. 1개월전망: 주 1회
- 2. 3개월전망: 월 1회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예측 정보의 제공 및 이상기후 전망 정보의 생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6조(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절차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기준”이란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주관하여 마련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관련 기준을 말한다.

-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승인을 받으려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데이터
- 2. 승인을 받으려는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설명하는 자료
- 3. 승인을 받으려는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전문 학술지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 등에 등재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 4. 그 밖에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에 필요한 참고자료(해당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상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8조제2항에서 같다)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2.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④ 영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7조(기후·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의 구축·운영)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후·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전처리(前處理) 과정: 초기자료의 생산 및 사전 실험 등
2.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후처리(後處理) 과정: 불확실성의 개선 및 지역 기후정보 상세화 등
3.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재현성 평가 및 검증
4.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최적화 과정
5. 슈퍼컴퓨터 기반 기술을 활용한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운영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기상과학원장이 정한다.

제8조(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① 법 제17조제3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1. 기상청장으로부터 지정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목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
 - 가. 영 제12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나.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연구·개발 사업계획서
 - 다. 해당 기관·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2.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목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
 - 가. 영 제12조제1항제2호 및 별표 2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의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상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과 같다.

1. 기상청장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2. 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

제9조(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의 발급) ①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발급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영 제17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상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③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 ④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 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의 발급 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자격증(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 2.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 3.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상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⑦ 기상청장은 제5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격증을 재발급해야 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부터 제2조의4까지를 각각 제2조의3부터 제2조의5까지로 하고, 제7조를 제2조의2로 한다.

제2조의2(종전의 제7조)제1항 중 “법 제23조제1항”을 “법 제12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3조제3항”을 “법 제12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지구대기감시망 관측장비 기준

(제2조제1항제1호 관련)

1. 지구대기감시망은 다음 각 목의 관측장비 중 1개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 가. 온실가스 측정기
- 나. 반응가스 측정기
- 다. 에어로졸 측정기
- 라. 성층권 오존 측정기
- 마. 자외선 측정기
- 바. 대기복사 측정기
- 사. 총대기침적 측정기
- 아. 방사성 물질 측정기

2. 제1호 각 목의 관측장비를 제외한 관측장비는 각 지구대기감시망의 목적에 따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별표 2]

지구대기감시망 관측환경 기준 (제2조제1항제2호 관련)

구분	기준
1. 장소	지구대기감시망 관측소의 위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지구대기감시 물질에 대하여 지역적으로 대표성이 있는 장소일 것 나. 대체로 주요 국지적인 오염원의 영향이 없거나, 적어도 오염 없는 특정 풍향 대기의 이류(移流)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장소일 것
2. 시설	90퍼센트 이상의 데이터 수집 및 안정적인 장비 유지를 위하여 적절한 전력이 공급되고 통신이 가능한 건물 등의 기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3]

지구대기감시망 관측방법 기준(제2조제1항제3호 관련)

관측분야	관측요소	관측방법
1. 온실가스	가. 이산화탄소(CO ₂)	공동광자감쇠분광법 비분산적외선분광법
	나. 메탄(CH ₄)	공동광자감쇠분광법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다. 아산화질소(N ₂ O)	가스크로마토그래피 공진출력분광법
	라. 염화불화탄소류(CFCs)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마. 육불화황(SF ₆)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바. 수소불화탄소(HFCs)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사. 과불화탄소(PFCs)	가스크로마토그래피
	2. 반응가스	가. 지표오존(O ₃)
나. 일산화탄소(CO)		공동광자감쇠분광법 공진출력분광법 비분산적외선분석법
다. 질소산화물(NO _x)		화학발광법 공동감쇠분광법
라. 이산화황(SO ₂)		자외선형광법
마.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가스크로마토그래피
3. 에어로졸		가. 미세먼지(PM10) 질량농도
	나. 크기별 수농도	공기역학적 거동
	다. 미세입자 크기별 수농도	전기적 이동도
	라. 응결핵 수농도	응결핵 성장 광산란법
	마. 광산란계수	비탁분석법
	바. 광흡수계수	필터흡수법
	사. 광학깊이	다중광학필터
	아. 연직분포	다파장 편광라이다법
	자. 이온성분	이온크로마토그래피
차. 원소성분	유도결합플라스마분광법	
4. 성층권 오존· 자외선	가. 오존전량	분광 광도 계수법
	나. 연직오존	전기화학 농도전지법
	다. 자외선A	광대역 복사측정
	라. 자외선B(홍반자외선)	광대역 복사측정
5. 대기복사	가. 태양하향복사(전천일사)	수평면일사 측정 열전퇴식
	나. 태양상향복사	수평면일사 측정 열전퇴식
	다. 직달일사	직사광 측정 열전퇴식
	라. 산란일사	산란광 측정 열전퇴식
	마. 지구상향복사	수평면장파복사 측정 열전퇴식
	바. 지구하향복사	수평면장파복사 측정 열전퇴식
	사. 순복사	상하향 복사 측정 열전퇴식
6. 총대기침적	가. 산성도	전위차 수소이온농도(pH) 측정법
	나. 전기전도도	전기전도도 분석법
	다. 강수이온성분	이온크로마토그래피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법인명(사업장명)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신청인)	전화번호
	법인(사업장) 주소	
신청 내용	산출 방법 [] 전지구 시나리오 [] 역학적 상세화 지역 시나리오 [] 통계적 상세화 지역 시나리오	
	공간 영역 [] 전지구 [] 동아시아 [] 한반도 [] 남한	
	사용모델	입력자료
	시나리오 경로	산출 시간해상도
	산출 공간해상도	산출기간(과거 기후 및 미래 전망)
	산출변수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상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승인을 받으려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데이터 2. 승인을 받으려는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설명하는 자료 3. 승인을 받으려는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전문 학술지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 등에 등재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4. 그 밖에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에 필요한 참고자료(해당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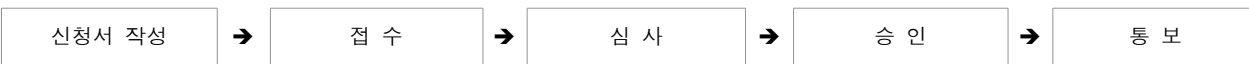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2호의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기상청(담당 부서)

제 호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서

법인명(사업장명)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신청인)		
법인(사업장) 주소		
기후변화 시나리오 내용	산출 방법	
	공간 영역	
	사용모델	
	입력자료	
	시나리오 경로	
	산출 시간해상도	
	산출 공간해상도	
	산출기간(과거 기후 및 미래 전망)	
	산출변수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기상청장 직인



기후변화감시에측전문기관 지정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5일
------	-----	----------

신청인	기관·단체명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사무실 소재지	(전화번호:)	
인력 현황		
업무 실적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후변화감시에측전문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상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연구·개발 사업계획서 3. 해당 기관·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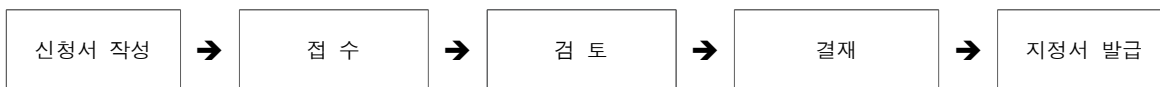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2호의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인

기상청
(담당 부서)

기상청

제 호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 지정서

1. 기관·단체명:
2. 대표자의 성명:
3. 사무실 소재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 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기상청장 직인

제 호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 지정서 (해양·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 분야)

- 기관·단체명:
- 대표자의 성명:
- 사무실 소재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 기관(해양·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 분야)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직인

제 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

1. 성명:

2. 생년월일: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상청장 직인

◇제정이유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생산을 위하여 기후변화 관측망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기후변화 예측에 활용하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대해 승인할 수 있도록 하며,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후변화감시에측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757호, 2023. 10. 24. 공포, 2024. 10. 2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954호, 2024. 10. 22. 공포, 2024. 10. 25.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관측망 중 지구대기감시망을 구축·운영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하는 관측장비·관측환경·관측방법별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 신청 시 승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제출서류 및 승인 절차 등을 정하며, 기후변화감시에측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시 인력·시설 기준 증명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서류 및 지정 절차 등을 정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구대기감시망의 관측장비·관측환경·관측방법 기준 구체화(안 제2조,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

기상청장은 지구대기감시망을 구축·운영하는 경우에는 온실가스 측정기, 반응가스 측정기 또는 에어로졸 측정기 등의 관측장비 중 1개 이상을 갖추도록 하고, 대체로 주요 국지적인 오염원의 영향이 없는 장소 등에 관측소를 두도록 하며, 온실가스 중 이산화탄소에 대한 관측방법을 공동광자감쇠분광법 등으로 하는 등 관측분야별 관측요소들에 대한 관측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나.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절차 등(안 제6조)

1) 기상청장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주관하여 마련한 기준을 바탕으로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 기준을 정하도록 함.

2)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 신청서에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 기준에 적합함을 설명하는 자료 및 전문 학술지 등에 등재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함.

다. 기후변화감시에측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안 제8조)

기후변화감시에측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단체는 지정 신청서에 인력·시설 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연구·개발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기상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안 제9조)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발급 신청서에 교육과정의 이수 등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기상청장은 자격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하도록 함.

<환경부 제공>